

2024학년도 제1차 학칙 개정(안)

학칙 제5조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현행						개정(안)					
학부명	학과명	입학정원	학부명	학과명	입학정원	학부명	학과명	입학정원	학부명	학과명	입학정원
간호대학	간호학과	108	보건과학부	환경안전보건과	20	간호대학	간호학과	108	보건과학부	환경안전보건학과	20
	임상병리과	120		메디컬코스메틱과	20		임상병리학과	120		메디컬코스메틱과	20
	치기공과	100		의무부사관과 (응급구조학전공)	30		치기공학과	100		의무부사관과 (응급구조학전공)	30
	치위생과	120		특전 의무부사관과	40		치위생학과	120		특전 의무부사관과	40
	식품영양과	20		경찰과학수사과	25		식품영양학과	20		경찰과학수사학과	25
	안경광학과	64		재난소방·건설안전과	25		안경광학과	64		재난소방·건설안전과	25
	바이오의약과	30		의료경영과	20		바이오의약과	30		의료경영과	20
보건의료학부 (II)	방사선과	120	보건융복합학부	컴퓨터정보과	20	보건의료학부 (II)	방사선학과	120	보건융복합학부	컴퓨터정보학과	20
	보건의료행정과	80		패션유틸리티스타일리스트과	20		보건의료행정학과	80		패션유틸리티스타일리스트과	20
	물리치료과	80		주얼리디자인과	20		물리치료학과	80		주얼리디자인과	20
	응급구조과	80		방송콘텐츠과	20		응급구조학과	80		방송콘텐츠과	20
	작업치료과	40		예술·체육지도과	20		작업치료학과	40		예술·체육지도과	20
	뷰티케어과	40		반려동물과	60		뷰티케어과	40		반려동물과	60
휴먼케어학부	사회복지과	40	교육학부	유아교육과	44	휴먼케어학부	사회복지학과	40	교육학부	유아교육학과	44
	장례지도과	40	교양교육원	인문교양	.		장례지도과	40	교양교육원	인문교양	.
	호텔외식조리과	36		과학기초	.		호텔외식조리과	36		과학기초	.
				합계	1,502					합계	1,502

2024학년도 제1차 학칙 개정(안)

학칙 제8조(조직)	
현행	개정(안)
<p>① 본 대학교에는 감사실, 기획조정실, 교무처, 학생·취업처, 입학처, 사무처를 두며 실 및 각 처에 두는 부서는 다음과 같다.</p> <p>1. <u>기획조정실</u>에는 기획팀, 인사팀, 정보기술팀, <u>대학평가</u>, <u>인증센터</u>를 둔다.</p> <p>2. - 6. 생략</p> <p>② - ③ 생략</p>	<p>① 본 대학교에는 감사실, 혁신기획처, 교무처, 학생·취업처, 입학처, 사무처를 두며 실 및 각 처에 두는 부서는 다음과 같다.</p> <p>1. 혁신기획처에는 전략기획팀, 미래융합센터, 대학성과관리센터, 정보기술팀을 둔다.</p> <p>2. - 6. 좌동</p> <p>② - ③ 좌동</p>
학칙 제13조(수업일수)	
현행	개정(안)
<p>① 생략</p> <p>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u>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u> 매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중략...한다.</p>	<p>① 좌동</p> <p>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중략...한다.</p>

2024학년도 제1차 학칙 개정(안)

학칙 제14조(휴업일)	
현행	개정(안)
① - ② 생략 ③ 부득이한 경우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① - ② 좌동 ③ 수업상 필요한 경우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학칙 제28조(전과)	
현행	개정(안)
① - ③ 생략 ④ 전과는 재학기간 동안 1회 허용할 수 있다. ⑤ 전과한 사람은 전출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입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① - ③ 좌동 ④ 삭제 ⑤ 전과한 사람은 전출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입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칙 제29조(등록절차)	
현행	개정(안)
학생은 매 학기초 총장이 공고한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학생은 가급적 총장이 공고한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학은 개강 후 3주차까지 추가로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2024학년도 제1차 학칙 개정(안)

학칙 제83조(공고기간)	
현행	개정(안)
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학칙 제85조(심의)	
현행	개정(안)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제·개정안은 학칙에 의거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제·개정안은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현행	개정(안)
<신 설>	이 학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5조와 제8조는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